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081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19년 12월 17일

제안자 : 환경수자원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하며, 교통안전 교육을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안전교육으로 하고 비용의 지원 주체를 시장으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음.

2. 주요 골자

- 수집관리인 우선 선발 대상에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을 포함함(안 제4조)
- ‘교통안전교육’을 안전사고 예방을 포함하는 포괄적 문구인 ‘안전교육’으로 하고 비용 지원의 주체를 시장으로 함(안 제7조제3항)

3. 참고사항: 생략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·고정식 거점을 말한다.

안 제4조제2호 중 “제2조 제2항”을 “제2조제2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호를 제4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

안 제7조제3항 중 “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”를 “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”으로 한다.

수정안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생략)</p> <p>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<u>임시적·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</u>을 말한다.</p> <p>3. ~ 4. (생략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<u>임시적·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</u>을 말한다.</p> <p>3. ~ 4. (현행과 같음)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<u>위한 이동식·고정식 거점</u>을 말한다.</p> <p>3. ~ 4.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〈신 설〉</p>	<p>제3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<u>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	<p>제3조의2(실태조사) (개정안과 같음)</p>
<p>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<u>선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<u>선정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·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65세 이상인 사람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<u>선정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·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</u></p> <p>1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 제2항에 따른 장애인</p> <p>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</p>

<p>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<u>제4조에서</u> 선정된 자로 한다.</p> 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~ ② (생략)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설〉</p>	<p><u>3.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<u>제4조에 따라</u> 선정된 자로 한다.</p> 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하여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, 실시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.</u></p>	<p><u>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</u></p> <p>제6조(지원대상)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~ ②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<u>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</u></p>
--	---	---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서울특별시 재활용품 수집·관리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안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한 이동식·고정식 거점을 말한다.

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조의2(실태조사)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

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·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

1. 65세 이상인 사람
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
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

따른 차상위계층

4.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
제6조 중 “제4조에서”를 “제4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7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·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생략) 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위하여 <u>임시적·일시적으로 설치한 이동식거점</u>을 말한다. 3. ~ 4. (생략)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〈신 설〉</p>	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(현행과 같음) 2. “재활용정거장”이란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기 <u>위한 이동식·고정식 거점</u>을 말한다. 3. ~ 4. (현행과 같음) <p>제3조의2(실태조사) <u>시장은 제3조에 따른 지원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·시행하기 위하여 수집·관리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자치구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.</u></p>
<p>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<u>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한다.</u></p>	<p>제4조(수집·관리인 선정) <u>수집·관리인은 관할지역 동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선정하며, 다음 각 호에 해당하고 이미 재활용품을 수집·관리하는 사람을 우선 선발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65세 이상인 사람 2.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 3.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제1항에 따른 수급권자와 같은 법 제2조제10항에 따른 차상위계층 4. 그 밖에 시장이 우선 선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
<p>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<u>제4조에서</u> 선정된 자로 한다.</p>	<p>제6조(지원대상)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며, <u>제4조에 따라</u> 선정된 자로 한다.</p>

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~ ② (생략)

〈신설〉

제7조(비용의 지원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

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구청장이 수집
· 관리인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
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예산의 범
위에서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